

## 대학경영·정책 등 자문에 관한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결정, 대학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륜 및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과 위촉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명칭)**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자의 명칭은 정책고문, 고문번호사, 고문회계사 및 고문노무사(이하 “고문”이라 한다)등으로 한다.

**제3조 (적용의 특례)** 고문에 대하여는 대학의 직제 및 사무분장, 사무처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특별히 위임된 업무는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, 그 결과는 위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4조 (고문의 직무)** ① 정책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

1.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관한 총장의 자문
2. 대학경영에 관한 법인 이사장 및 총장의 자문
3. 법인 이사장 및 총장이 특별히 지정하여 위임한 사항

② 고문번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

1. 대학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·소원 및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
2.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
3. 법적문제에 관한 자문과 계약검토에 관한 사항
4.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정하여 위임한 사항

③ 고문회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

1. 세무회계 분쟁과 조정에 관한 사항
2. 세무회계 사무처리와 회계법령의 적용에 관한 사항
3. 조세관련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
4.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정하여 위임한 사항

④ 고문노무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

1. 노사관계 분쟁과 조정에 관한 사항
2. 노사업무 처리와 노사관련 법령의 적용에 관한 사항
3. 노사관련 대리행위에 관한 사항
4.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정하여 위임한 사항

**제5조 (위촉과 임기)** ①고문의 수는 각 분야별로 각각 2인 이내로 하되,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3인까지 증원할 수 있다.

②고문은 총장이 위촉하되, 정책고문은 법인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③고문의 위촉기간은 총장이 정하되,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 (의무의 준수)**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사립학교 관련법령·법인정관·법인과 대학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,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2.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3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4. 맡은바 직무와 관련하여 대학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건을 수행하지 못한다.
5.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대학에 재산 및 금전상의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**제7조 (예우와 보수지급)** ①정책고문은 대학의 제반 행사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의견을 받을

수 있다.

②고문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의 대가로 월정액의 자문료와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자문료와 사건수임보수는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, 정책고문의 자문료 총액이 총장의 보수총액의 100분의 70이상이어서는 아니 된다.

③고문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변상적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정책고문에 대하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무실과 차량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**제8조 (해촉)** ①고문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은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정책 고문은 법인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자로서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고 문으로 위촉될 수 없다.

**제9조 (자문결과의 제출)** 대학의 각 부서의 장은 고문으로부터 서면으로 자 문을 받은 사항은 그 결과를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준용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학교 관련법령과 법 인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준용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